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5. 10.)

목 차

I. 공동재보험 유형

1. 자산이전형
2. 약정식 자산유보형
3. 일임식 자산유보형

II. 공동재보험 유형별 회계처리 예시

1. 자산이전형 회계처리
2. 약정식 자산유보형 회계처리
3. 일임식 자산유보형 회계처리

III.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IV. FAQ

I 공동재보험 유형

1. 자산이전형

-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①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②재보험료를 즉시 지급하는 구조
 - (장점) 거래 구조가 단순하여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
 - (단점) 거래 시점 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유동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

2. 약정식 자산유보형

-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①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되, 이에 따른 ②재보험료는 미지급하는 구조
 - (장점) 거래 시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동성 부담이 없고,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하며 운용자산 이전 없이 재보험 자산이 추가되어 금리위험 이전 극대화 가능
 - (단점) 구조가 복잡하여 추가적인 운영 부담 발생 가능

3. 일임식 자산유보형

-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①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되, 이에 따른 ②재보험료는 미지급하지만, ③재보험료 상당 자산(유보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재보험사에 일임하고 재보험사에 운용손익 귀속
 - (장점) 거래 시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동성 부담이 없고,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하며, 재보험사에 유보자산의 운용 손익이 귀속되므로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료가 저렴
 - (단점) 구조가 복잡하며, 정산시점마다 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수익 측정(공정가치 평가 등) 필요

- IFRS17 도입 이후 IFRS4의 선급비용, 선수수익의 계정은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산(출재BE, 출재RA, 출재CSM)으로 회계처리
 - (회계처리 예시 가정) 원보험사의 최초 잔여보장부채는 600 (BEL 400, RA 60, CSM 140), 출재율 50%, 거래가격 300 가정하며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 영향은 원보험사 회계처리 기준임

1. 자산이전형 회계처리

[재보험 계약 시점]

-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가격에 상응하는 운용자산을 이전하며 동일 금액의 재보험자산을, 재보험사는 잔여보장부채를 계상
 - 재보험자산은 출재BE, 출재RA, 출재CSM으로 구성
 - 출재BE : 재보험금 -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 출재RA : 원수RA를 준용하여 출재BE 기준 스트레스 현금흐름 기반으로 측정
 - 최초측정 출재CSM : 거래가격 - 출재BE - 출재RA 로 산출

재보험 계약시점 회계처리 예시			
(차) 재보험자산	300	(대) 운용자산	300
- 출재 BE	200		
- 출재 RA	10		
- 출재 CSM	9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	부채	-
운용자산	△300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300	-BEL	-
-출재BE	+200	-RA	-
-출재RA	+10	-CSM	-
-출재CSM	+90		
		자본	-
		이익잉여금	-
		AOCI	-

[보험료 및 보험금]

- 보험료, 보험금의 예실차 반영 및 보험부채의 이자부리, CSM 상각과 RA해제 등은 전통적 재보험과 동일하게 처리
-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은 현금 수령/지급하며, 예상 및 실제 현금흐름은 매 사업연도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령/지급 시 회계처리 예시 (예상 및 실제보험료는 90, 예상보험금 40, 실제보험금 60 가정)				
(재)보험료	(차) 현금	90	(대) 보험부채	90
			-BEL	90
(재)보험료	(차) 재보험자산	45	(대) 현금	45
	- 출재 BE	45		
(재)보험금	(차) 보험부채(BEL)	40	(대) 보험수익 (예상원보험금)	40
	(차) 보험비용 (실제원보험금)	60	(대) 현금	60
	(차) 보험비용 (예상재보험금)	20	(대) 재보험자산 - 출재 BE	20
	(차) 현금	30	(대) 보험수익 (실제재보험금)	3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40	부채	+50
운용자산	+15	보험부채	+50
재보험자산	+25	-BEL	+50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10
		이익잉여금	△10
		AOCI	-

[후속 측정]

- 재보험자산에 대해 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며, 출재CSM 상각과 출재RA 해제를 보험손익으로 반영
- RA에 이자부리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

이자부리와 CSM상각 및 RA해제 예시 (원수 및 출재 최초측정 할인율 5%, CSM상각기간 10년, 차기 원수RA 55, 출재RA 8 가정)				
이자부리	(차) 보험금융비용	30	(대) 보험부채	30
	- BEL부리이자*1	23	- BEL	23
	- RA부리이자	0	- RA	0
	- CSM부리이자*2	7	- CSM	7
	(차) 재보험자산	16	(대) 보험금융수익	16
	- 출재BE	11	- 출재BE부리이자*3	11
- 출재RA	0	- 출재RA부리이자	0	
- 출재CSM	5	- 출재CSM부리이자*4	5	
CSM 상각 및 RA 해제	(차) 보험부채	20	(대) 보험수익	20
	- CSM*5	15		
	- RA*6	5		
	(차) 보험비용	11	(대) 재보험자산	11
			- 출재CSM*7	9
		- 출재RA*8	2	

*1 BEL 부리이자 22.5 = (기초BEL 400 + BEL 변동 50) x 최초측정 할인율 5%

*2 CSM 부리이자 7 = (기초CSM 140 + CSM 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3 출재 BE 부리이자 11.25 = (기초출재BE 200 + 출재BE 변동 25) x 최초측정 할인율 5%

*4 출재 CSM 부리이자 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5 원수 CSM 상각 14.7 = (기초CSM 140 + CSM변동 0 + CSM부리이자 7) / 10년

*6 원수 RA 해제 5 = 최초원수RA 60 - 차기 원수RA 55

*7 출재 CSM 상각 9.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 출재CSM부리이자 4.5) / 10년

*8 출재 RA 해제 2 = 최초출재RA 10 - 차기 출재RA 8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10
운용자산	-	보험부채	+10
재보험자산	+5	-BEL	+23
-출재BE	+11	-RA	△5
-출재RA	△2	-CSM	△8
-출재CSM	△4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2. 약정식 자산유보형 회계처리

[재보험 계약 시점]

□ 계약시점에 현금수수가 없으므로, 양사가 협의하여 명시한 유보금 만큼 원보험사는 보험미지급금, 재보험사는 보험미수금으로 계상

○ IFRS17에서 보험관련 현금흐름은 BE에 포함되므로,

- 원보험사의 보험미지급금은 출재BE(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액 표시
- 재보험사의 보험미수금은 BE(부채)에서 차감하여 순액 표시

최초 시점 회계처리 예시 (시가평가 보험미지급금 300 가정)

(차) 재보험자산	300	(대) 보험미지급금	300
- 출재BE	200		
- 출재RA	10		
- 출재CSM	90		
(차) 보험미지급금	300	(대) 재보험자산	300
		- 출재 BE	30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	부채	-
운용자산	-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	-BEL	-
-출재BE	△100	-RA	-
-출재RA	+10	-CSM	-
-출재CSM	+90		
		자본	-
		이익잉여금	-
		AOCI	-

[보험료 및 보험금] : 자산이전형과 동일

- 보험료, 보험금의 예실차 반영 및 보험부채의 이자부리, CSM 상각과 RA해제 등은 전통적 재보험과 동일하게 처리
-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은 현금 수령/지급하며, 예상현금흐름은 매 사업연도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령/지급 시 회계처리 예시 (예상 및 실제보험료는 90, 예상보험금 40, 실제보험금 60 가정)				
(재)보험료	(차) 현금	90	(대) 보험부채	90
			-BEL	90
	(차) 재보험자산 - 출재 BE	45 45	(대) 현금	45
(재)보험금	(차) 보험부채(BEL)	40	(대) 보험수익 (예상원보험금)	40
	(차) 보험비용 (실제원보험금)	60	(대) 현금	60
	(차) 보험비용 (예상재보험금)	20	(대) 재보험자산 - 출재 BE	20
	(차) 현금	30	(대) 보험수익 (실제재보험금)	3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40	부채	+50
운용자산	+15	보험부채	+50
재보험자산	+25	-BEL	+50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10
		이익잉여금	△10
		AOCI	-

[후속 측정] : 자산이전형과 동일

- 재보험자산에 대해 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며, 출재CSM 상각과 출재RA 해제를 보험손익으로 반영
- RA에 이자부리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

이자부리와 CSM상각 및 RA해제 예시 (원수 및 출재 최초측정 할인을 5%, CSM상각기간 10년, 차기 원수RA 55, 출재RA 8 가정)				
이자부리	(차) 보험금융비용	30	(대) 보험부채	30
	- BEL부리이자*1	23	- BEL	23
	- RA부리이자	0	- RA	0
	- CSM부리이자*2	7	- CSM	7
	(차) 재보험자산	1	(대) 보험금융수익	1
	- 출재BE	(-)4	- 출재BE부리이자*3	(-)4
	- 출재RA	0	- 출재RA부리이자	0
	- 출재CSM	5	- 출재CSM부리이자*4	5
	(차) 운용자산*5	16	(대) 금융수익	16
	CSM 상각 및 RA 해제	(차) 보험부채	20	(대) 보험수익
- CSM*6		15		
- RA*7		5		
(차) 보험비용		12	(대) 재보험자산	12
			- 출재CSM*8	10
			- 출재RA*9	2

- *1 BEL 부리이자 22.5 = (기초BEL 400 + BEL 변동 50) x 최초측정 할인을 5%
- *2 CSM 부리이자 7 = (기초CSM 140 + CSM 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을 5%
- *3 출재BE 부리이자 (-)3.75 = (기초출재BE (-)100 + 출재BE 변동 25) x 최초측정 할인을 5%
- *4 출재CSM 부리이자 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을 5%
- *5 운용자산 투자수익 16 = 보험미지급금 해당 유보 운용자산 300 x 투자수익률 5.3%
- *6 원수 CSM 상각 14.7 = (기초CSM 140 + CSM변동 0 + CSM부리이자 7) / 10년
- *7 원수 RA 해제 5 = 최초원수RA 60 - 차기 원수RA 55
- *8 출재 CSM 상각 9.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 출재CSM부리이자 4.5) / 10년
- *9 출재 RA 해제 2 = 최초출재RA 10 - 차기 출재RA 8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10
운용자산	+16	보험부채	+10
재보험자산	△11	-BEL	+23
-출재BE	△4	-RA	△5
-출재RA	△2	-CSM	△8
-출재CSM	△5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유보금 이자 발생 및 정산]

- 계약서상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약정된 유보금 상환액에 대해 원보험사의 보험미지급금과 재보험사의 보험미수금을 정산
 - 이자 발생금액은 현금 정산하지 않고 보험미지급금 증가로 가정
 - 원보험사는 출재BE에서 차감된 보험미지급금을 제거하고, 재보험사는 BE에서 차감된 보험미수금 제거

유보금 이자발생 및 정산 회계처리 예시 (유보금 이자 5 발생, 상환액 30 현금지급 가정)				
이자발생	(차) 이자비용	5	(대) 보험미지급금	5
	(차) 보험미지급금	5	(차) 재보험자산	5
			- 출재 BE	5
정산	(차) 보험미지급금	30	(대) 현금	30
	(차) 재보험자산	30	(대) 보험미지급금	30
			- 출재BE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
운용자산	△30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25	-BEL	-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3. 일임식 자산유보형 회계처리

[재보험 계약 시점] :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동일

□ 계약시점에 현금수수가 없으므로, 양사가 협의하여 명시한 유보금 만큼 원보험사는 보험미지급금, 재보험사는 보험미수금으로 계상

- IFRS17에서 보험관련 현금흐름은 BE에 포함되므로,
 - 원보험사의 보험미지급금은 출재BE(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액 표시
 - 재보험사의 보험미수금은 BE(부채)에서 차감하여 순액 표시

최초 시점 회계처리 예시 (시가평가 보험미지급금 300 가정)			
(차) 재보험자산	300	(대) 보험미지급금	300
- 출재BE	200		
- 출재RA	10		
- 출재CSM	90		
(차) 보험미지급금	300	(대) 재보험자산	300
		- 출재 BE	30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	부채	-
운용자산	-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	-BEL	-
-출재BE	△100	-RA	-
-출재RA	+10	-CSM	-
-출재CSM	+90		
		자본	-
		이익잉여금	-
		AOCI	-

[보험료 및 보험금] : 자산이전형 및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동일

- 보험료, 보험금의 예실차 반영 및 보험부채의 이자부리, CSM 상각과 RA 해제 등은 자산이전형 및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재보험과 동일하게 처리
-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은 현금 수령/지급하며, 예상현금흐름은 매 사업연도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령/지급 시 회계처리 예시 (예상 및 실제보험료는 90, 예상보험금 40, 실제보험금 60 가정)				
(재)보험료	(차) 현금	90	(대) 보험부채	90
			-BEL	90
(재)보험금	(차) 재보험자산	45	(대) 현금	45
	- 출재 BE	45		
(재)보험금	(차) 보험부채(BEL)	40	(대) 보험수익 (예상원보험금)	40
	(차) 보험비용 (실제원보험금)	60	(대) 현금	60
	(차) 보험비용 (예상재보험금)	20	(대) 재보험자산 - 출재 BE	20
	(차) 현금	30	(대) 보험수익 (실제재보험금)	3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40	부채	+50
운용자산	+15	보험부채	+50
재보험자산	+25	-BEL	+50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10
		이익잉여금	△10
		AOCI	-

[후속 측정] :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동일(단, 자산운용손익은 재보험사 인식)

-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동일하게 재보험자산에 대해 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며, 출재CSM 상각과 출재 RA 해제를 보험손익으로 반영하되,
 - 약정식 자산유보형과 달리, 유보자산(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 손익을 원보험사가 아닌 재보험사가 인식

이자부리와 CSM상각 및 RA해제 예시(RA에는 이자부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 (원수 및 출재 최초측정 할인율 5%, CSM상각기간 10년, 차기 원수RA 55, 출재RA 8 가정)				
이자부리	(차) 보험금융비용	30	(대) 보험부채	30
	- BEL부리이자*1	23	- BEL	23
	- RA부리이자	0	- RA	0
	- CSM부리이자*2	7	- CSM	7
	(차) 재보험자산	1	(대) 보험금융수익	1
	- 출재BE	(-)4	- 출재BE부리이자*3	(-)4
	- 출재RA	0	- 출재RA부리이자	0
	- 출재CSM	5	- 출재CSM부리이자*4	5
CSM 상각 및 RA 해제	(차) 보험부채	20	(대) 보험수익	20
	- CSM*5	15		
	- RA*6	5		
	(차) 보험비용	12	(대) 재보험자산	12
			- 출재CSM*7	10
			- 출재RA*8	2

*1 BEL 부리이자 22.5 = (기초BEL 400 + BEL 변동 50) x 최초측정 할인율 5%
 *2 CSM 부리이자 7 = (기초CSM 140 + CSM 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3 출재BE 부리이자 (-)3.75 = (기초출재BE (-)100 + 출재BE 변동 25) x 최초측정 할인율 5%
 *4 출재CSM 부리이자 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5 원수 CSM 상각 14.7 = (기초CSM 140 + CSM변동 0 + CSM부리이자 7) / 10년
 *6 원수 RA 해제 5 = 최초원수RA 60 - 차기 원수RA 55
 *7 출재 CSM 상각 9.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 출재CSM부리이자 4.5) / 10년
 *8 출재 RA 해제 2 = 최초출재RA 10 - 차기 출재RA 8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10
운용자산	+16	보험부채	+10
재보험자산	△11	-BEL	+23
-출재BE	△4	-RA	△5
-출재RA	△2	-CSM	△8
-출재CSM	△5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유보자산 운용수익 발생 및 정산]

- 원보험사는 유보자산(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손익 발생 시 즉시 현금 정산하는 대신 보험미지급금(보험미수금)으로 계상
 - 이후 정산시점에 약정된 유보자산 상환액과 운용손익*으로 인한 보험미지급금(보험미수금)을 정산

* 유보자산 운용손익은 상계처리되므로 원보험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음

유보자산 운용수익 발생 및 정산 회계처리 예시 (운용수익률 4%, 상환액 30 현금지급 가정)			
운용수익 발생	(차) 운용자산(현금)	12 (대) 투자손익* ¹	12
	(차) 보험금융손익* ¹	12 (대) 보험미지급금*	12
정산	(차) 재보험자산 - 출재BE	30 (대) 보험미지급금	30
	(차) 보험미지급금	42 (대) 운용자산(현금)* ²	42

*1 투자손익(보험금융손익) 12 = 기초 유보자산 300 * 운용수익률 4%

*2 운용자산(현금) 42 = 금융손익으로 인한 보험미지급금 12 + 약정된 유보자산 상환액 3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	부채	-
운용자산	△30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30	-BEL	-
-출재BE	+30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
		이익잉여금	-
		AOCI	-

III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 (1단계) 원보험사 제안요청 단계

○ 제안 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발송

- 재보험사 계약 인수 의사 확인 목적, 원보험사 작성 후 송부

<RFP 발송시 주요 작성 요청 내용>

구 분	내 용
출재대상	상품 유형,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표준이율 등
재보험형태	자산이전형 / 자산유보형 등
출재조건	출재율, 출재기간, 정산방식 등
제안일정 및 기타사항	제출 기한, 필수기재사항 등

○ 비밀유지 협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 계약 관련 정보 및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양사의 비밀유지의무

□ (2단계) 언더라이팅 및 거래가격 제안

○ 기초자료 제공

- 재보험사는 Pricing을 위한 기초자료를 원보험사에 요청

- RFP와 함께 기초자료 제공된 경우, 추가 요청자료 협의

<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 List>

No.	기초 데이터	제공 주체
1	대상상품의 기초서류 * 약관, 사업방법서, 산출방법서	원보험사
2	원보험사의 현금흐름 산출 결과	
3	증권별/특약별 계약속성 (모델포인트)	
4	대상상품의 보험료 및 준비금 Table	
5	현금흐름 산출 기초가정 * 계리적 및 경제적 가정 등	
6	계리적 가정 산출을 위한 데이터 정보 * 수입보험료, 계약상태, 발생손해액 등	
7	기타 경제적 가정 산출을 위한 데이터 정보 * 공시이율 History 및 외부지표금리 등	

- 언더라이팅 절차

-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현금흐름 산출 후 투입자본, 지급여력 영향 등을 산출

- 제안가격 설정

- 재보험사는 전반적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하여 제안가격 결정
- 공동재보험 거래 형태별 거래가격 및 조건 제시

- (3단계) 재무영향 분석 및 거래 여부 결정 단계

- 재무영향 분석

-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효익 검토

- 거래 여부 결정 및 세부 거래조건 협의

- (4단계) 특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단계

- 특약서 체결 및 계약개시

- 위험전가 개시 및 계약의무 이행

- (5단계) 공동재보험 거래 신고 단계

- 공동재보험 거래 신고

-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 거래에 대한 금감원 신고 실시
- 신고서 기재내용 : 거래목적 및 기대효과, 위험전가평가 결과, 재무영향분석, 회계처리 적정성, 특약조건 등

IV FAQ

1 공동재보험의 효익과 비용은?

☞ 공동재보험의 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익변동성 관리
- 자본변동성 관리
- 자본비용 경감(요구자본 감소 효과)
- ALM 리스크관리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ROE 개선 및 보험사 핵심사업 집중 여력 확보
-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회사 가치 재평가

☞ 공동재보험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보험료 등 이전으로 인한 재보험사 신용리스크 노출 가능성 존재
다만, 재보험사의 담보제공 등으로 리스크 제거 가능
- 공동재보험 체결 전후 손익 변화 효과 발생

2 IFRS17에서 선수수익 및 선급비용 처리방식은?

☞ IFRS4에서 보험부채의 장부가액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선수수익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IFRS17에서는 부채를 시가평가하므로, 거래가격과 시가평가 부채와의 차이는 출재CSM으로 처리됩니다.

IFRS4와 IFRS17에서의 부채 구분 비교



3

자산이전형과 자산유보형 중 원보험사에 유리한 형태는?

- ☞ 원보험사의 재무구조 및 공동재보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효익에 따라 유리한 공동재보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형의 경우 보험 및 금리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으며, 자산 및 부채를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거래가격에 반영되므로, 재보험사의 자산운용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형태입니다.

유보형의 경우 초기 이전 가격 지급이 없어 유동성 및 재보험자 신용리스크 부담이 없으며, 운용자산 이전 없이 재보험자산이 발생하므로 원보험사는 전사 금리리스크 및 지급여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이전형 거래 시 운용자산 이전 방식은?

- ☞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국채, 회사채 등 금융자산의 양수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중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자산이전형 거래 시 재보험사의 담보제공 방법은?

- ☞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와 사전에 약정한 금융자산을 분기마다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는 신용익스포저의 만기까지 롤오버되어 제공되며, 담보물은 만기가 되더라도 만기시점 현금 지급액에 대해 담보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정됩니다. 담보제공을 통해 출재사는 공동재보험에 내재된 신용위험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자산유보형 거래 시 유보금은 어떤 금액으로 설정하는지?

- ☞ 양사는 특정 금액 또는 특정 기준으로 유보금을 협의하여 정하고, 유보금 정산 스케줄도 동시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7 약정식 자산유보형 거래 시 유보금에 대한 적용 금리는?

- ☞ 국고채 금리 또는 CD 금리 등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 후 이를 기준으로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설정합니다.

8 자산유보형 거래 시 유보금 정산 시기 및 방법은?

- ☞ 유보금 정산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9 공동재보험 거래 시 비례재보험의 의미는?

- ☞ 재보험거래에서의 비례재보험은 원보험사가 특정 보험상품을 통해 유입되는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출재할 경우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도 출재비율만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을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한 경우에도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운용하여야 하나요?

☞ 원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계약을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한 경우에도 출재 전과 동일하게 해당 계약의 준비금 상당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운용*하여야 합니다.

* 재보험료의 지급 및 재보험금 수취 등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감독규정(§5-7)에 따라 계정간 이체 가능

반면, 재보험사가 수재 받은 장기손해보험 관련 공동재보험 자산은 현행 보험업법(§108①)에 따른 특별계정 설정·운용 대상이 아니므로 재보험사는 수재 받은 자산을 일반계정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유보자산에 대해 원보험사에 자산운용한도(법 § 106)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경우 유보자산은 원보험사가 계속해서 보유하며, 동 자산의 운용손익만 재보험사에 귀속되므로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와의 사전 약정 등을 통해 보험업법상(§106) 자산운용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업법 §106) 대주주 채권·주식(자기자본 60%), 동일법인 채권·주식(자산의 7%) 등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을 공시기준이율에 반영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공시기준이율은 보험사에 실제 귀속된 자산운용손익을 기반으로 산출되어야 하므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은 원보험사가 아닌 동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회사의 공시기준이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편, 원보험사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운용손익이 공시기준이율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주석)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국도 일임식 자산유보형의 운용손익 관련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중

[참고] 주석 공시 예시

38. 투자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당기 및 전기의 투자손익과 보험금융손익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투자손익	이자수익(비용)	xxx	xxx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운용손익(주1)	xxx	-
보험금융 손익	이자수익(비용)	xxx	xxx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운용손익(주1)	(xxx)	-
합 계		xxx	xxx

(주1) 당기말 현재 당사는 사망담보 등에 대하여 xxx재보험(주)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계약을 출재하고 있습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계약이란 원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재보험사에는 책임준비금만 이전하되, 유보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을 재보험사에 일임하고, 관련 운용손익이 모두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시기준이율 계산 시 동 운용손익은 제외됩니다.**